##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보호 조치 내용으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에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 등에 필요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동행한 사람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듣기 거부하거나 동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면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자 이송 중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도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6. ~ 3. 18., 7. 7. ~ 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1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 규제 강화(1건, 응급환자 대응능력 제고)

보건복지부령 제 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동행한”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응급의료종사자 외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와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응급의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경우
2. 응급환자와 동행한 사람 중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그 동행한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3. 응급환자와 동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이 조에서 “피해응급의료종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다.

1. 피해응급의료종사자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가해자”라 한다)을 분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일시적인 업무 배제

   나.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장소 변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가해자가 피해응급의료종사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의 위반행위 현장 출동

   나. 가해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퇴거 조치

   다.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3. 피해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에 가해자 고발

5. 피해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경우 그 고소에 필요한

행정적 및 절차적 지원

6. 위반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응급의료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② 피해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본문 중 “응급환자”를 “환자”로, “위하여”를 “위해”로,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경우에는 법 제48조”로,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을 “1명 이상이 포함된 2명”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료법에 의한”을 “「의료법」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배치: 2027년 1월 1일

별표 5 광주의 응급의료권역 구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전남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

별표 5의2 제2호나목3)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3) 중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3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8조의2제4항”을 각각 “제1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⑧부터 ⑭까지를 각각 ⑨부터 ⑮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⑧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관도착 연월일은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기관(시설)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9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5. (생 략)<br>② (생 략)<br>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 동행한 ---------- 받아야 ----------.<br>1. ~ 5.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응급의료종사자 외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br>1. 응급환자와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응급의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경우<br>2. 응급환자와 동행한 사람 중 |

| | | |
|---|---|---|
| | | 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그 동행한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br>3. 응급환자와 동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 |
| <신 설> | | 제5조의2(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이 조에서 “피해응급의료종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다.<br>1. 피해응급의료종사자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하 이 조에 |

| | |
|---|---|
| | 서 “가해자”라 한다)을 분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br>가.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일시적인 업무 배제<br>나. 피해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장소 변경<br>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br>2. 가해자가 피해응급의료종사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br>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의 위반행위 현장 출동<br>나. 가해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퇴거 조치<br>다.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br>3. 피해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 | |
|---|---|
| | 4. 관할 수사기관에 가해자 고발<br>5. 피해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경우 그 고소에 필요한 행정적 및 절차적 지원<br>6. 위반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응급의료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br>② 피해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제5조의2 (생 략)<br>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 제5조의3 (현행 제5조의2와 같음)<br>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 환자---------- 위해 ---------- 경우에는 법 제48조---------- 1명 이상이 포함된 2명 ---------- 해야 ----. ---- 「의료법」에 따른 ---------- |

| | |
|---|---|
|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br>-- 않을 -------. |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br>----------<br>----------<br>----------<br>----------<br>----------<br>---. |
| 1. 삭 제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배치: 2027년 1월 1일 |